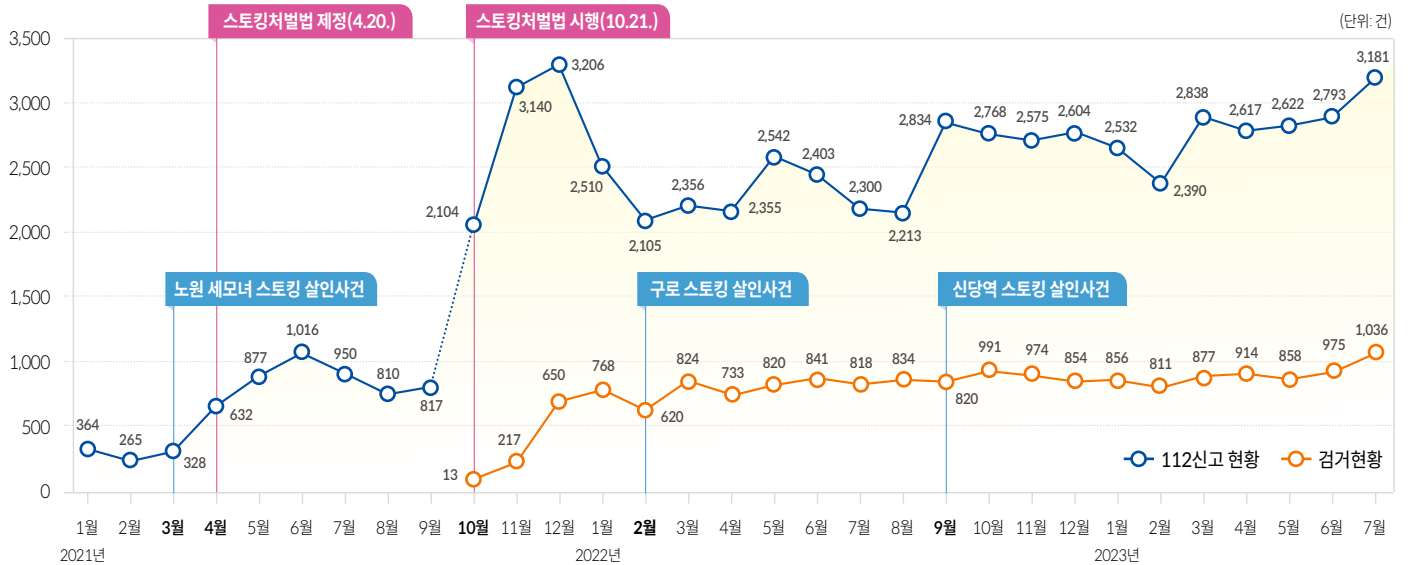


# 데이터로 보는 스토킹범죄

#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,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 7월 11일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스토킹처벌법'이라 한다)」이 일부개정되었다. 이번 개정으로 반의사불범죄 규정이 삭제되었고, 스토킹행위의 정의가 확대되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. 한편,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스토킹방지법'이라 한다)」은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다.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적절한 입법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스토킹행위 및 범죄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.

###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112 신고 및 검거현황



자료: 경찰청(2023년 통계는 잠정통계)

2021년 10월 21일 「스토킹처벌법」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, 2023년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55,796건에 달한다. 월평균 2,536건, 하루 평균 약 86건이 신고 접수되었다. 같은 기간 「스토킹처벌법」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17,104건이다.

2021년 10월 21일 부터 2023년 7월까지 경찰이 「스토킹처벌법」 위반으로 검거한 인원은 17,300명이다. 같은 기간 11,220명(64.8%)이 송치되었고, 5,912명(34.1%)은 불송치, 201명(1.1%)은 수사종지로 나타났다.



자료: 경찰청(2023년 통계는 잠정통계)

## 스토킹행위와 스토킹 범죄

스토킹  
범죄

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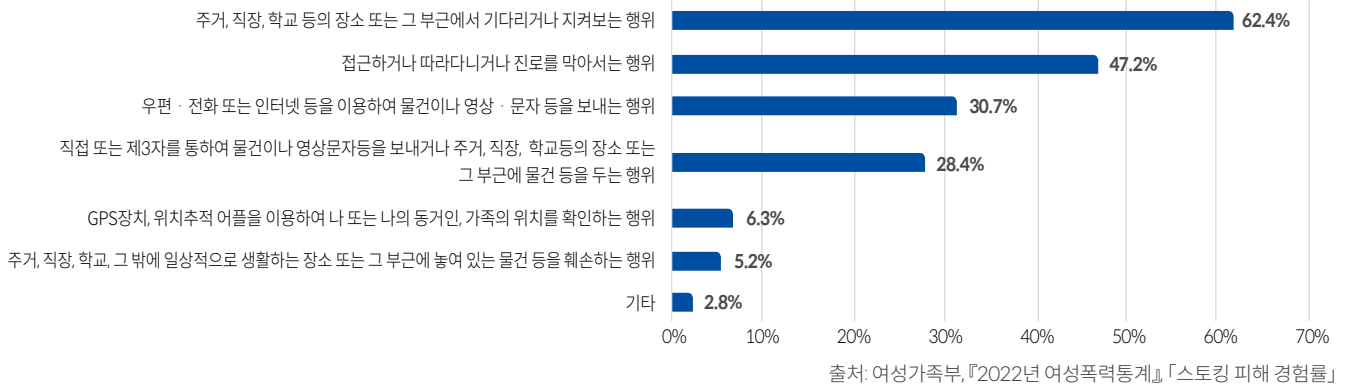
스토킹  
행위

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(이하 "상대방등"이라 한다)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

-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- 주거, 직장, 학교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-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(이하 "물건등"이라 한다)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전화 기능으로 물건등이 상대방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
-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
-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
- 개인정보, 개인위치정보,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(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)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
-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름, 명칭, 사진, 영상 또는 신분을 사칭하는 행위

(산설)  
온라인 스토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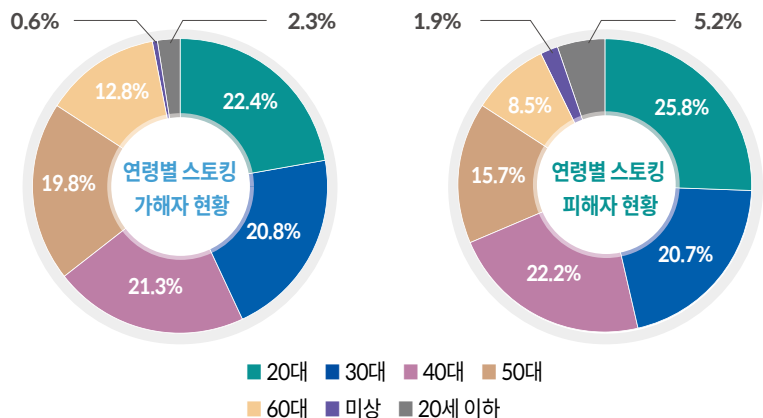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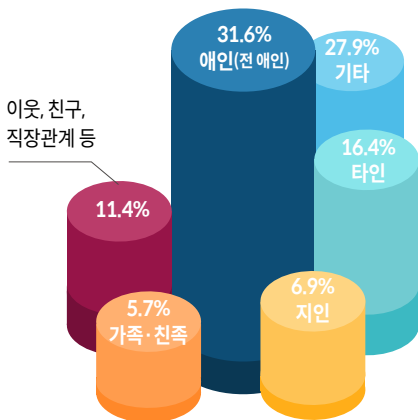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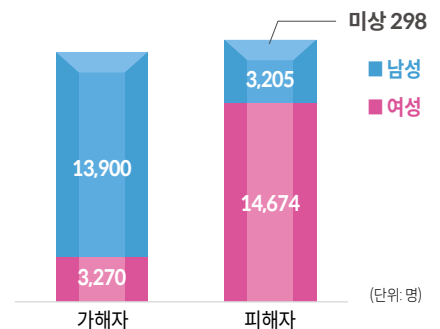
## 스토킹 피해 유형



##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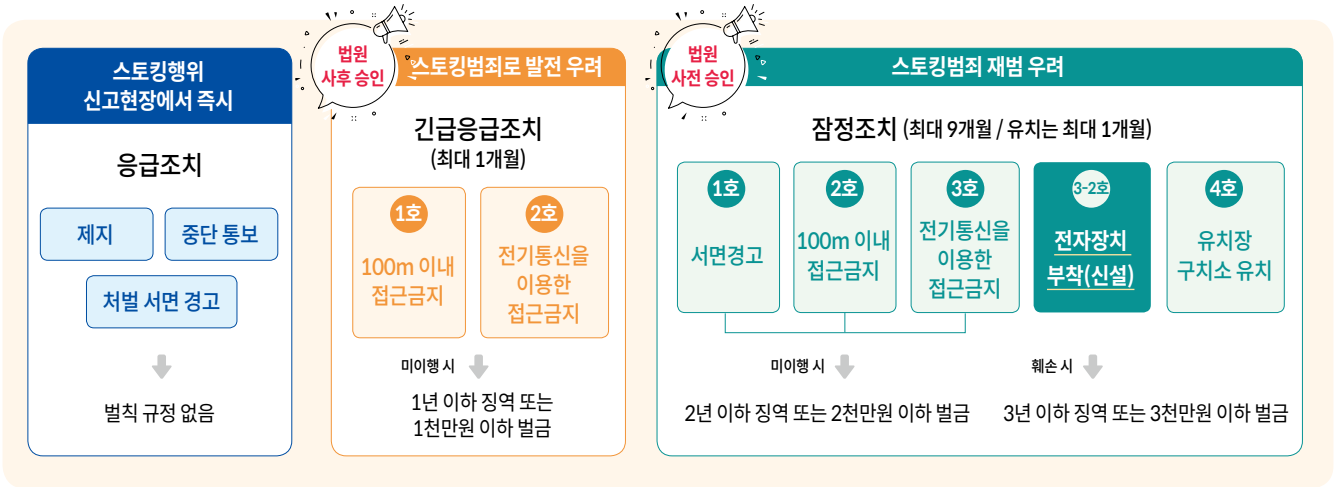
(2021년 10월 21일~2023년 7월 기준)

스토킹 범죄 관련 성비 현황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81%가 남성이었으며, 피해자의 약 80.7%가 여성이었다.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애인(전 애인 포함)이 31.6%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(27.9%), 타인(16.4%)이 뒤를 이었다.



자료: 경찰청(2023년 통계는 잠정통계), 2023년 이후 통계시스템 개선으로 피해자 관계 유형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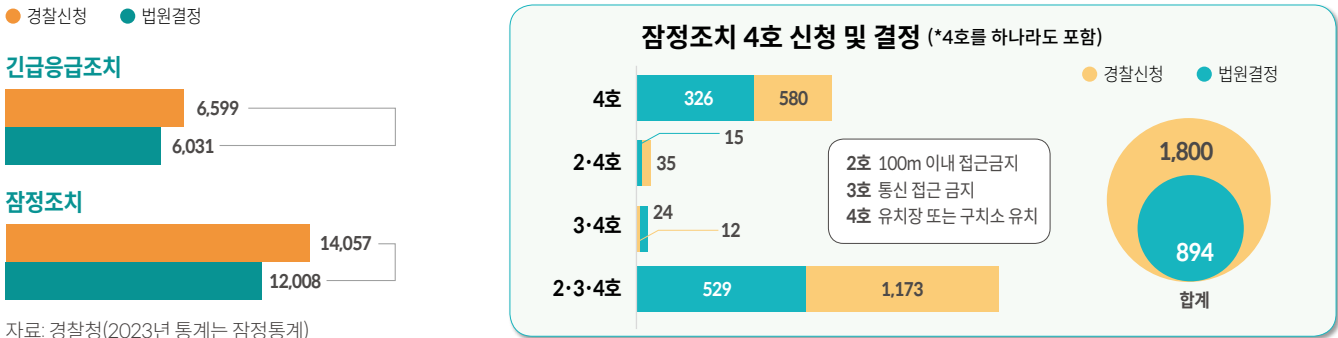
## 스토킹처벌법상 제재 조치 현황



「스토킹처벌법」시행 이후부터 2023년 7월까지 스토킹 피해를 접수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한 경우는 6,599건이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건수는 6,031건이다. 한편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14,057건이며, 이 중 법원이 결정한 것은 12,008건이다. 전체 잠정조치 중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한 4호를 하나라도 포함한 신청은 1,800건으로 전체의 12.8%를 차지한다. 신청한 잠정조치 4호 중 법원이 결정한 건수는 894건(49.7%)이다.

### [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단계별 현황] (단위: 건)

(2021년 10월 21일~2023년 7월 기준)



## 개정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

<b>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</li> <li>•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추가</li> <li>•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(전자발찌) 도입</li> </ul>
<b>피해자 보호 강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도입</li> <li>•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도입</li> <li>• 피해자 국선번호사 제도 도입</li> </ul>
<b>잠정조치·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정형 상향(전자장치 훼손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</li> <li>•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</li> </ul>
<b>잠정조치· 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경이 검사에게 잠정조치 취소·변경·연장 신청 근거 규정 신설</li> <li>• 잠정조치·긴급응급조치가 취소·변경·연장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 규정 신설</li> <li>• 검사·사경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청구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 규정 신설</li> </ul>

#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7. 11.] [법률 제19518호, 2023. 7. 11., 일부개정]

### 제4조(긴급응급조치)

- ① 사법경찰관은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
1.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  2.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### ② 생략

### 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

-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“잠정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1.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
  2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  3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  - 3의2.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(이하 “전자장치”라 한다)의 부착
  4.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
-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- ③ ~ ⑦ 생략

### 제18조(스토킹범죄)

- ①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스토킹처벌법 관련 법률안

대표발의	주요내용
노용호의원[2120179]	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(안 제4조제1항제1호).
고민정의원[2120402]	스토킹행위에 전화를 거는 행위 등 상대방이 인지하도록 접촉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, 실제 발생하는 스톱킹 행위를 포괄하도록 스톱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스톱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).
소병훈의원[2120476]	스토킹범죄에도 ‘피해자보호명령’ 제도를 도입하여,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호의 공백상황을 최소화
최영희의원[2121200]	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,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 이에 ‘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’도 잠정조치로 추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잠정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
유정주의원[2121317]	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.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
송재호의원[2123320]	잠정조치에 스톱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, 범죄예방과 재범률 및 재신고율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(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).



「Data&Law」는 입법과통계서비스(<https://argos.nanet.go.kr>),

국회법률도서관(<https://law.nanet.go.kr>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발간등록번호 31-9720116-001998-14

ISSN 2982-6241



국회도서관  
NATIONAL ASSEMBLY LIBRARY